

보도시점 2024. 2. 27.(화) 11:00 배포 2024. 2. 27.(화) 09:00

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

-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.23(화) 발표한 바 있으며,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, 2.29(목) 공포될 예정입니다.

【 첨 부 】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
소득세(4211~3, 4215~4217), 법인세(4221~4, 4226),

상속증여세·종합부동산세·양도소득세(4311~3, 4316~8),

금융세제·교육세(4231~3, 4236), 부가가치세·인지세(4321~3, 4326),

개별소비세·주세·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(4331, 4333, 4336).

국제조세(4651~6, 4661~6, 4671~2, 4675),

조세특례·농어촌특별세법(4131~3, 4136, 4142),

관세(4411~3, 4416, 4431~3, 4461~4462, 4471~3),

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(4151, 4152, 4154)

담당 부서	세제실	책임자	과 장	양순필 (044-215-4110)
	조세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배현중(hyunjcondbæ@korea.kr)





참고

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

1. 소득세법 시행령

□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(소득령 §108의3)

당 초 안	수 정 안
□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	□ 적용시기 조정
ㅇ (대상주택)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	ㅇ (좌 동)
(적용시기)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	

〈수정이유〉 노후 주거 안정 강화

2. 법인세법 시행령

□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(법인령 §21)

당 초 안	수 정 안
□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	□ 현행 유지
○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	

3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□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(상증령 §15②)

당 초 안	수 정 안
□ 가업상속공제 요건 [*] 완화 *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	□ 일부 사업장 이전·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
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 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	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,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% 이상인 경우
② 사업장 전부 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	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,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% 이상인 경우

4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□ **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**(부가령 §42(2)아·자 신설)

당 초 안	수 정 안
□ 개인·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	□ 면제 범위 명확화
 (대상)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	ㅇ (좌 동)
- 근로자파견·공급 용역	- 근로자공급 용역
-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 하여 제조·건설·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	-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· 수리,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 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(「파견법」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)
ㅇ (적용시기) '24.7.1. 이후 공급분	○ '25.1.1. 이후 공급분

5.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① 수소제조용 석유가스(LPG)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(개소령 §2의2)

당 초 안						수	정	안	
	□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□ 시행시기 변경 탄력세율 적용(기본세율의 △30%)								
○ (세율)					ㅇ (좌	동)			
			(원/	Kg)					
구분 기본세율 팀		탄력세율							
HEL	일반	252	275						
부탄	수소제조용	252	176.4						
	일반		-						
_ 프로판 	가정-상업용 수소제조용	20	14						
) o (>	○ (시행시기) '24.4.1 .				o '24 .	3.1.			

〈수정이유〉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

②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(개소령 §19의3①)

당 초 안	수 정 안
□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면세요건	□ 면세요건 소급 적용
(대상) 18세 미만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	
- 취학·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	ㅇ (좌 동)
(시행시기)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분부터 적용	 '23.1.1.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

〈수정이유〉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

6.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□ **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**(조특령 §93의5)

당 초 안	수 정 안
□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	□ 시행일 조정
 ○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→ 1개월 이상으로 완화 	ㅇ (좌 동)
ㅇ 공포일부터 시행	○ '24.6.1.부터 시행

7. 관세법 시행령

□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(관세령 §251의2)

당 초 안	수 정 안
□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	□ 손실보상 금액 조정
ㅇ 손실보상 대상	
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, 운송·운반수단 손실보상 금액 	- (좌 동)
- 수리할 수 없는 경우	- 수리할 수 없는 경우
1) 검사대상 물품 :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	1) (좌 동)
2) 포장용기, 운송·운반수단 :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(구매가격 한도 내)	2)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(구매가격 한도 내) → 구매 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
- 수리할 수 있는 경우 :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	- (좌 동)

〈수정이유〉 손실보상 금액 합리화

□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(관세령 §263의3) 당 초 안 수 정 안 □ 관세청이 정보제출 요청 가능한 □ 정보제공 주체 및 범위 조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범위 ㅇ 외교부 0 (좌 동) - 최근 10년간 마약밀수·유통 범죄로 체포·구금된 후 재외 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(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)의 개인 정보,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ㅇ 법무부 - 최근 10년간 마약밀수·유통 -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 정보,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○ 법무부 → 대검찰청 - 최근 10년간 마약밀수 ·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,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🗕 - 최근 10년간 마약밀수·유통 - (좌 동)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, 범죄 사실 및 처분내역 <삭 제>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-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ㅇ (좌 동)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, 배송경로를 조회한

〈수정이유〉 부처협의 결과 반영

자의 IP 주소 등